

대법원 2021. 7. 21 선고 2021다228776(본소), 2021다228783(반소) 판결

[매매대금 ·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1. 7. 21 선고 2021다228776(본소), 2021다228783(반소)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4. 15 선고 2020나50599(본소), 2020나50605(반소)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12. 10 선고 2018가소380207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상고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피상고인

B

판 결 선 고 2021. 7. 21.

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4. 15. 선고 2020나50599(본소), 2020나 50605(반소)

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천대엽, 대법관 조재연, 주 심 대법관 민유숙, 대법관 이동원